

서울디지털재단 - 한화정밀기계 업무 협약서 [MOU]

서울디지털재단 (이하 '디지털재단'이라 한다)과 한화정밀기계 주식회사(이하 '한화정밀기계'라 한다)가 소상공인 지원 협동로봇 개발 보급 사업 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.

제1조 (목적)

본 업무협약은 "디지털재단"과 "한화정밀기계" 양 기관이 수제화 공정에 협동로봇을 개발 보급함에 있어 관련 공정을 검토하고 개발하며 사업성과를 홍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협력의 범위 및 역할)

양 기관은 상호 협력 의지를 천명하기 위하여 상호 협력 분야 및 각 당사자의 역할을 아래와 같이 잠정적으로 정한다.

- 서울디지털재단은 해당 사업 전담기관으로서 공장 · 공방 등 수요처를 발굴하고 전반적 사업 관리를 수행한다.
- 한화정밀기계는 협동로봇 제조처로서 제품을 적기에 공급하고 2차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한다.
- 한화정밀기계와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아진시스템(주)은 한화정밀기계와의 대리점 계약 관계자로 본 협약에 포함된 것으로 보되 현업자 요구분석, 협동로봇 설치, 시스템 개발, 1차 기술지원 및 교육을 수행한다. 단, 해당 역할 수행과정에서 한화정밀기계는 제조처로서 적극적 지원을 확약한다.
- 그 외 추가 협력이 필요한 경우 양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.

제3조 (유효기간)

- 본 업무협약은 양 기관이 서명날인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.
- 본 업무협약은 별도의 사정에 의해 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종료까지 효력이 발생하며, 종료시점에 기간연장 등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본 업무협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비밀유지)

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에 따른 협약 진행 중은 물론 중도에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에도 본 업무협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상대방의 지식재산권, 영업비밀(매출실적 포함) 등 본 협약과 관련하여 상대로부터 취득한 비밀로 표시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아니 되며 누설되어 발생된 모든 피해는 귀책사유가 있는 당사자가 즉시 배상을 한다.

서울디지털재단 - 한화정밀기계 업무협약서(MOU)

제5조 (법적 구속력)

- ① 본 업무협약의 제4조 (비밀유지), 제5조 (법적 구속력)을 제외하고는 법적인 구속력은 없으며 상호협력 함을 기본으로 한다. 단 제4조(비밀유지)의 경우에는 본 업무협약의 유효기간(사업 종료 시)까지 법적인 구속력을 인정한다.
- ② 본 업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대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- ③ 본 업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식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사용권, 실시권 등을 허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- ④ 본 업무협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방 당사자로 하여금 상대방과 별도의 구체적 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.

본 협약은 상호 협조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기업 윤리에 적합한 사업 운영을 하여 기관과 기업 이미지를 승화, 발전시키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한다.

본 협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해 양 기관은 본 업무협약서를 2부 작성하여 각 기명날인 후 1부씩 보관한다.

2019년 7월 3일



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416

이사장

고한석 (인)



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1204

로봇사업부장 라종성 (인)

